

##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시행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의 감염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지침에 준하여 다음과 같이 집합금지·제한 명령을 (1.5단계 → 2단계) 격상하여 변경 시행합니다.

2020년 12월 1일

전 주 시 (장)

### ① 다중이용시설 등 집합제한(방역수칙 의무화) 행정명령

#### 1. 중점관리시설(유흥시설 5종) 집합금지 행정명령

가. 적용대상 :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

- 클럽·룸살롱 등 유흥주점, 단란주점, 감성주점(감성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 포함), 콜라텍, 헌팅포차

나. 처분당사자 :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 책임자·종사자 및 이용자

다. 처분내용 : 집합금지

라. 처분근거 : 처분근거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 49조 제1항 제2호2의2, 2의3, 2의4

마. 처분기간 : 2020. 11. 30.(월) 0시 ~ 별도 해제 시 까지

바. 처분사유 : 코로나19 확진사례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지역사회에서 감염 위험성이크고,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

사. 처분의 효력 발생일 : 2020. 11. 30.(월) 0시부터

## 2. 중점·일반관리시설 등 집합제한 행정명령

가. 적용대상 : 유흥시설 5종을 제외한 중점관리시설 및 일반관리시설 등

처분내용	중점관리시설
중점관리시설 (4종)	▲노래연습장 ▲실내스탠딩 공연장 ▲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▲식당·카페(일반음식점·휴게음식점·제과점영업)
일반관리시설 (14종)	▲PC방 ▲결혼식장 ▲장례식장 ▲학원(교습소 포함) ▲직업훈련기관 ▲공연장 ▲영화관 ▲놀이공원워터파크 ▲오락실멀티방 ▲목욕장업 ▲실내체육시설 ▲이·미용업 ▲상점마트백화점(종합소매업 300㎡이상) ▲독서실스터디카페

나. 처분당사자 : 중점관리시설(유흥시설 5종 제외) 및 일반관리시설 등  
책임자·종사자 및 이용자

다. 처분내용 : 집합제한, 방역수칙 의무화

라. 핵심방역수칙

1) 유흥시설 5종을 제외한 중점관리시설 및 일반관리시설 방역수칙

구분	시설 특성별 방역수칙	
중점관리시설	공통	▶ 마스크 착용, 출입자 명단 관리, 환기·소독
	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	▶ 8㎡당 1명 인원 제한 ▶ 21시 이후 운영 중단 ▶ 노래, 음식 제공 금지
	노래연습장	▶ 21시 이후 운영 중단 ▶ 시설 면적 4㎡당 1명 인원 제한 ▶ 음식 섭취 금지 ▶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, 30분 후 사용
	실내 스탠딩 공연장	▶ 21시 이후 운영 중단 ▶ 좌석 배치하여 운영(스탠딩 금지), 좌석 간 1m 거리두기
	식당·카페 (일반·휴게음식점, 제과점영업)	▶ (식당) 21시 이후 포장·배달만 허용 추가 ▶ (식당) 50㎡ 이상의 시설 테이블 거리두기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/테이블 한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/가림막 설치 중 한가지 준수 ▶ (카페) 영업시간 전체 포장·배달만 허용 ▶ 뷔페의 경우 다음 두 가지 수칙 추가 준수 - 공용 집게·접시·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-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※ 브런치카페나 베이커리카페 등에서는 커피·음료·디저트류는 포장·배달만 허용한다. 단, 식사는 가능하며 식사할 경우 음식점 방역수칙을 적용

일반 관리 시설	실내체육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21시 이후 운영중단</li> <li>▶ 음식 섭취 금지</li> <li>▶ 시설 면적 4㎡당 1명 인원 제한</li> <li>▶ 마스크 착용, 출입자 명단 관리, 환기·소독</li> </ul>
	결혼식장, 장례식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</li> <li>▶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</li> <li>▶ 마스크 착용, 출입자 명단 관리, 환기·소독</li> </ul>
	목욕장업, 오락실·멀티방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음식섭취 금지</li> <li>▶ 시설 면적 8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</li> <li>▶ 마스크 착용, 출입자 명단 관리, 환기·소독</li> </ul>
	영화관, 공연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음식 섭취 금지</li> <li>▶ 좌석 한 칸 띄우기</li> <li>▶ 마스크 착용, 출입자 명단 관리, 환기·소독</li> </ul>
	PC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음식 섭취 금지(칸막이 안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)</li> <li>▶ 좌석 한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</li> <li>▶ 마스크 착용, 출입자 명단 관리, 환기·소독</li> </ul>
	학원(독서실 제외), 교습소, 직업훈련기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음식 섭취 금지</li> <li>▶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</li> <li>▶ ① 시설 면적 8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</li> <li>▶ ② 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</li> <li>▶ 마스크 착용, 출입자 명단 관리, 환기·소독</li> </ul>
	이·미용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시설 면적 8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</li> </ul>
	독서실·스터디카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음식 섭취 금지(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)</li> <li>▶ 좌석 한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</li> <li>▶ 단체룸은 50%로 인원 제한, 21시 이후 운영 중단</li> <li>▶ 마스크 착용, 출입자 명단 관리, 환기·소독</li> </ul>
	놀이공원·워터파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수용인원의 1/3으로 인원 제한</li> <li>▶ 마스크 착용, 출입자 명단 관리, 환기·소독</li> </ul>
	상점·마트·백화점 (300㎡ 이상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마스크 착용, 환기·소독</li> </ul>

## 2) 일상 및 사회·경제적 활동별 방역수칙

구분	내용
마스크 착용 의무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실내 전체,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(집회·시위, 스포츠 관람 등)</li> <li>* (실내) 버스·택시·기차·선박·항공기,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,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하며, 가정내, 개별 공간(개인 사무실 등 사람 간 접촉이 없는 공간)은 제외</li> </ul>
모임·행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100인 이상의 모임·행사 금지</li> <li>* 전시·박람회,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, 100인 미만 기준 미적용</li> </ul>
스포츠 관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10% 이내로 관중 입장</li> </ul>

교통시설	▶ 마스크 착용 의무화, 버스·기차 등 교통수단(차량)내에서 음식 섭취 금지(국제항공편 제외)
국공립시설	▶ 경륜·경정·경마·카지노의 경우 운영중단 ▶ 실내시설 운영중단(노인돌봄시설 등 필수시설 제외) ▶ 이외 시설은 30%로 제한
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	▶ 시설 인원 제한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유지
종교활동	▶ 정규예배·미사·법회·시일식 등 좌석 수의 20% 이내 인원참여 ▶ 모임·식사 금지 ▶ 마스크 착용, 출입자 명단 관리, 환기·소독
직장근무	▶ 공공기관 적정비율(예 : 전 인원의 1/3) 재택근무 등 실시, 점심시간 시차운영, 시차출퇴근제 등 적극 활용, 민간 권고 ▶ 고위험 사업장 마스크 착용, 주기적 소독, 거리두기, 환기·소독 의무화

## 2 기타사항

### 1. 처분근거
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2호

#### [감염병예방법]

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 ①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2. 흥행, 집회,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
- 2의2.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
- 2의4.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

제80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7. 제47조(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) 또는 제49조제1항(같은 항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)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

제83조(과태료) ②제49조제1항제2호의2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
2.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

2. **처분사유** : 코로나19 확진사례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지역사회에서 감염 위험성이 크고,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
3. **처분기간** : 2020. 11. 30.(월) 0시 ~ 별도 해제 시 까지
4. **처분서의 교부요청** : 처분 당사자는 「행정절차법」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5. **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**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「행정소송법」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6. **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**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0조에 의하여 벌금에 처하거나 제83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, 심각한 위반이 있는 경우, 집합금지 처분 및 위반으로 발생한 확진 관련 검사·조사·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.

**붙임 :** 1. **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설별·활동별 방역수칙 1부.**  
2. **분야별 업무 담당부서 1부.**

# 붙임1

#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설별 · 활동별 방역수칙

□ (용어정의) **기본수칙** : 마스크 착용, 출입자 명부관리, 소독·환기

**핵심 방역수칙** : 기본수칙 + 업종별 추가 방역수칙

예) 유흥시설 : 기본수칙<sup>마스크 착용, 출입자 명부관리, 소독·환기</sup> + 시설 면적 4㎡당 1명 인원 제한

구 분	1.5단계	2단계
모임·행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500명 미만 행사는 <b>기본수칙</b> 권고 단, 마스크 착용은 별도명령으로 의무화</li> <li>○ 500명 이상 행사는 <b>기본수칙 의무화</b> ⊕ 관할 시군과 협의한 별도 방역계획에 포함된 거리두기 등 <b>추가된 방역수칙</b> 의무화 가능</li> <li>○ 집회·시위, 대규모 콘서트, 학술행사, 축제 이상 4종은 10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<b>100인 이상 금지</b></li> <li>-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</li> <li>-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(예 : 교실)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</li> </ul>
종교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30% 이내로 인원 제한, 모임·식사 금지, 숙박행사 금지, <b>핵심방역수칙(=기본수칙+ 최소 1m 거리두기)</b> 의무화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<b>20%</b> 이내로 인원 제한, 모임·식사 금지, 숙박행사 금지, <b>핵심방역수칙(=기본수칙+ 최소 1m 거리두기)</b> 의무화</li> </ul>
다중이용시설	<p><b>중점관리시설 (9종)</b></p> <p>&lt;중점관리시설 9종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유흥시설 5종(콜라텍, 유흥주점, 단란주점, 감성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, 헌팅포차 형태의 운영업소),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, 노래연습장, 식당·카페(일반음식점·휴게음식점·제과점영업, 50㎡ 이상)</li> <li>* 실내스탠딩공연장은 도내에 없음</li> </ul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<b>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(=기본수칙 + 업종별 방역수칙)</b></li> <li>○ (업종별 방역수칙)</li> <li>▶ (유흥시설 5종) 시설 면적 4㎡당 1명 인원 제한, 춤 추기·좌석간 이동 금지</li> <li>▶ (방문판매 홍보관) 노래·음식제공 금지, 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, 21시 이후 운영 중단</li> <li>▶ (노래연습장)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, 30분 후 재사용, 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, 음식 섭취 금지</li> <li>▶ (식당·카페: 50㎡ 이상 일반·유흥음식점, 제과점영업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, ② 좌석/테이블 한 칸 띄우기, ③ 테이블 간 칸막이/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</li> <li>● 뷔페의 경우 다음 두 가지 수칙 추가 준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공용 집게·접시·수저 등 사용 전후 손 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,</li> <li>-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/ul>	<p><b>중점관리시설 (9종)</b></p> <p>&lt;중점관리시설 9종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유흥시설 5종(콜라텍, 유흥주점, 단란주점, 감성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, 헌팅포차 형태의 운영업소),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, 노래연습장, 식당·카페(일반음식점·휴게음식점·제과점영업)</li> <li>* 실내스탠딩공연장은 도내에 없음</li> </ul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<b>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(=기본수칙 + 업종별 방역수칙)</b></li> <li>○ (업종별 방역수칙)</li> <li>▶ (유흥시설 5종) <b>집합금지</b></li> <li>▶ (방문판매 홍보관) 노래·음식제공 금지, 시설 면적 <b>8㎡</b>당 1명으로 인원 제한, 21시 이후 운영 중단</li> <li>▶ (노래연습장) <b>21~05시 운영 중단</b>,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, 30분 후 재사용, 시설 면적 4㎡당 1명 으로 인원 제한, 음식 섭취 금지</li> <li>▶ (모든 식당·카페) 카페는 포장·배달만 허용, 음식점은 21~05시 포장·배달만 허용, 이하 좌동</li> </ul> <p>※ 브런치카페나 베이커리카페 등에서는 커피·음료·디저트류는 포장·배달만 허용한다. 단, 식사는 가능하며 식사할 경우 음식점 방역수칙을 적용한다.</p>
	<p><b>일반관리시설 (14종)</b></p> <p>&lt;일반관리시설 14종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PC방, 결혼식장, 장례식장, 학원(교습소 포함), <b>직업훈련기관</b>, 목욕장업, 이·미용업, 공연장, 영화관, 놀이공원·워터파크, 오락실·멀티방,</li> </ul>	<p>&lt;일반관리시설 14종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PC방, 결혼식장, 장례식장, 학원(교습소 포함), <b>직업훈련기관</b>, 목욕장업, 이·미용업, 공연장, 영화관, 놀이공원·워터파크, 오락실·멀티방,</li> </ul>

구 분		1.5단계	2단계
		<p>실내체육시설(집단운동 포함), 독서실·스터디 카페, <b>상점·마트·백화점</b>(종합소매점, 300㎡ 이상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<b>핵심 방역수칙 의무화</b> (=기본수칙 + 업종별 방역수칙)</li> <li>○ (업종별 방역수칙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(결혼식장, 장례식장, 목욕장업, 오락실·멀티방) 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</li> <li>▶ (학원(교습소 포함), 직업훈련기관, 이미용업) 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</li> <li>▶ (영화관, 공연장)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</li> <li>▶ (PC방)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</li> <li>▶ (실내체육시설) 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, 음식 섭취 금지</li> <li>▶ (놀이공원·워터파크) 수용 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인원 제한</li> <li>▶ (독서실·스터디카페)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, 단체룸은 50%로 인원 제한</li> <li>▶ (상점·마트·백화점) 마스크 착용, 환기·소독</li> </ul> </li> </ul>	<p>실내체육시설(집단운동 포함), 독서실·스터디 카페, <b>상점·마트·백화점</b>(종합소매점, 300㎡ 이상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<b>핵심 방역수칙 의무화</b> (=기본수칙 + 업종별 방역수칙)</li> <li>○ (업종별 방역수칙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(결혼식장, 장례식장) 개별 결혼식, 장례식 홀 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제한</li> <li>▶ (목욕장업, 오락실·멀티방) 음식 섭취 금지, 시설 면적 8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</li> <li>▶ (학원(교습소 포함), 직업훈련기관) 음식 섭취 금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① 시설 면적 8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, ② 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중 한 가지 준수</li> </ul> </li> <li>▶ (이·미용업) 시설 면적 8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</li> <li>▶ (영화관, 공연장) 음식 섭취 금지, 좌석 한 칸 띄우기</li> <li>▶ (PC방) 음식 섭취 금지, 좌석 한 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</li> <li>▶ (실내체육시설) 21~05시 운영 중단, 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, 음식 섭취 금지</li> <li>▶ (놀이공원·워터파크) 수용 가능인원의 1/3으로 인원 제한</li> <li>▶ (독서실·스터디카페) 음식 섭취 금지, 좌석 한 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, 단체룸은 50%로 인원 제한</li> <li>▶ (상점·마트·백화점) 좌동</li> </ul> </li> </ul>
	마스크 착용 의무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실내 2인 이상인 경우 의무</li> <li>○ 실외 집회, 공연 등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의무</li> </ul>	○ 좌동
	스포츠 행사	○ 관중 수 제한(수용 가능인원 30%) (기본수칙 철저히 준수 권고)	○ 관중 수 제한(수용 가능인원 10%) (기본수칙 철저히 준수 권고)
	국·공립시설	○ 인원 제한(수용 가능인원 50%) - 경륜·경정·경마 카지노는 20%로 제한 (기본수칙 철저히 준수 권고)	○ 인원 제한(수용 가능인원 30%) - 경륜·경정·경마 카지노는 운영 중단 - 실내시설 운영 중단 ※ 노인돌봄시설 등 필수시설 제외 (기본수칙 철저히 준수 권고)
	사회복지 이용시설	○ 운영 가능 (기본수칙 철저히 준수 권고)	○ 이용 정원의 50% 이하(최대 100인)로 운영 * 사회복지시설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 참조
기관 기업	공공	○ 기관별·부서별 적정비율(예: 전 인원의 1/3) 재택근무 등 실시	○ 좌동
	민간	○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형태 권고 -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·밀집 사업장은 마스크 착용, 주기적 소독, 근무자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	○ 좌동

**붙임2**

**분야별 업무 담당부서**

연번	조치 분야	담당 부서		비고
		시	구청	
1	클럽 등 유흥주점, 감성주점 형태 음식점, 콜라텍, 단란주점, 헌팅포차, 식당·카페(일반·휴게음식점, 제과점영업), 이·미용업	환경위생과	자원위생과	
2	노래연습장, PC방, 오락실·멀티방, 영화관	문화정책과	가족청소년과	
3	학원, 독서실	(주관) 전주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	행정지원과	
	스터디카페	(협조) 교육청소년과	행정지원과	
4	실내체육시설	체육산업과 (시설관리공단)	가족청소년과 (체육도장시설)	
5	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	일자리청년정책과	경제교통과	
6	상점·마트·백화점			
7	직업훈련기관	일자리청년정책과	경제교통과	
8	놀이공원·워터파크(물놀이형 유원시설)	관광산업과	가족청소년과	
9	공연장	문화정책과	가족청소년과	
10	결혼식장	여성가족과		
11	목욕장업	환경위생과	자원위생과	
12	장례식장	통합돌봄과	가족청소년과	
13	종교시설	문화정책과	행정지원과	동주민센터 협조
14	기타시설	인·허가 등 업무 관련 부서		
15	대중교통(버스, 택시 등)	시민교통과		
16	집회·시위장	(총괄)자치행정과 (점검)관련부서	행정지원과	구청 관련부서 협조
17	의료기관(병·의원, 약국 등)	보건소(보건행정과)		
18	요양시설, 주·야간보호시설	통합돌봄과		
보건소 (보건 행정과)	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총괄 주무관장부서, 마스크 착용 위반 단속기준 마련, 질의답변 등			
시민 안전 담당관	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점검·지도 총괄 및 취합, 단속부서 지정, 홍보 및 재난관리기금 지원			